

제24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7. 3. .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재무위원회

서울특별시 강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7. 3. .
행정·재무위원회

1. 심 사 경 과

- 가. 제출일자 : 2017년 3월 3일 / 강서구청장
- 나. 회부일자 : 2017년 3월 6일
- 다. 상정일자 : 제24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 상정·의결(2017. 3. 20.)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문제영 부동산정보과장)

□ 제안이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2016년 9월 1일 분법·공포 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과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서울특별시 강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를 「서울특별시 강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로 변경

나. 위원회의 근거 규정 및 위원회 명칭 변경(안 제1조)

- 「서울특별시 강서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를 「서울특별시 강서구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74조 로 변경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 실시(2016. 12. 28. ~ 2017. 1. 17.) 결과 : 의견 없음
-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3)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 4) 성별영향평가 : 평가 제외 대상

4. 전문위원 검토의견

(전문위원 : 강희순)

○ 본 개정조례안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과 위원회운영 근거규정 및 명칭 변경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가. 제명을 “서울특별시 강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에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로 변경하고

나. 안 제1조의 위원회 운영 근거법령 및 조문을 변경된 법령 및 조문으로 변경하며,

다. 안 제1·2조의 위원회 명칭을 “부동산평가위원회” 에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로 변경하는 사항임

○ 본 개정조례안의 검토 결과

상위법인 근거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타당
하다고 사료됨.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 붙임 : 관련 법령 1부.

〈붙임〉

관 계 법 령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부동산공시법 시행령)

[시행 2017.1.20.] [대통령령 제27793호, 2017.1.17., 타법개정]

□제74조(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①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된다. 이 경우 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2명 이상이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명하는 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된다.

③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의 사정에 정통한 사람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④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하여는 [제72조](#)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약칭: 부동산공시법)

[시행 2016.9.1.] [법률 제13796호, 2016.1.19., 전부개정]

□제25조(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소속으로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둔다.

1.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에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